

제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결과보고서

1. 개회이유

- 태안군이 태안읍 평천3리에 설치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인해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주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이로인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목적 및 허가조건과 달리 일반쓰레기와 각종 산업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
- 이에따른 현황과 서산시의 그동안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함.

2. 개회기간

- '98. 7. 16 ~ 제32회 임시회 개회전까지

3. 주요골자

- 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추진 현황조사
- 서산시 지곡면 건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실태 조사
- 서산시의 대응상황파악 및 대책강구

4. 개회결과

제 1 차 회 의

- 일 시 : '98. 7. 16(목) 10:30
- 회의결과
 - 태안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우리의 입장확인 및 반대입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현지답사 및 시료채취와 함께 앞으로의 추이를 관망 대처키로함.
 - 제2차 회의시('98. 7. 20)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현지답사키로 결의

제 2 차 회 의

- 일 시 : '98. 7. 20(월) 10:30
- 회의결과
 - 태안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현지답사
 - 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건의서를 작성하여 서산시의회의원 일동 명의로 농림부장관을 방문 건의키로 협의

기타 주요내용

1) 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 관련

- 건의서 전달 : 태안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98. 7. 24일 농림부장관과 충청도지사에게 전달
- 농림부와 충청도의 건의서에 대한 회신내용
 - 태안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건은 동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집단화된 우량 농지로 보존가치가 높고, 동지역에 매립장 설치시 주변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어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한다는 내용임.

2) 지곡면 건축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 조치결과
 - 지곡면 무장리의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기준 위반 및 허가조건 위반으로 서산시에서 '98. 8. 26 ~ '98. 10. 10까지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